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합[1)]

1. 사건개요

(1) 신청인 아들의 유죄판결과 자살에 대한 신문기사

신청인의 죽은 아들은 로마 가톨릭 신부로 1999년 미성년자 성추행 미수와 2002년 동성애 관련 풍기문란혐의로 집행유예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1년과 2003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로 각각 형이 실효되었다. 2006년 신청인의 아들은 사망하였고, 그 후 2년 뒤 3개의 타블로이드 신문은 신청인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한 죽은 신부의 사진, 그의 이름과 사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게재하였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은 신청인의 아들이 자신의 범죄행위와 양성애성향을 자백했고, 이후 그가 모시고 있던 주교는 그의 형사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톨릭교회가 법원에서 신청인 아들의 훌륭한 행실을 보증한 덕분에 그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풀려났거나 아니면 유죄판결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국내 소송 과정

신청인은 슬로바키아 민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들의 인격의 완전성(personal integrity)을 사후에 보호해줄 것과 동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격의 완전성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며, 3개 신문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그녀의 아들이 풍기문란에 대한 죄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미수에 대한 죄를 자백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사실

1) CASE OF M.L. v. SLOVAKIA, Application no. 34159/17, 2021. 10. 14. 결정

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은 가톨릭교회가 법원에서 아들의 훌륭한 행실을 보증했다는 내용은 아들의 형사재판 결정문에 나오지 않고, 아들은 약물중독과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문기사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과 가치판단으로 인해 신청인은 이웃과 신청인의 아들을 알았던 이들로부터 비난과 질문 세례를 받았고, 이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신청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Michalovce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는 시장(mayor)과 주교실(bishop's office)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시장과 주교실은 신문사와의 대화 자체를 부인하였다. 한 기자는 취재원에게서 받은 신청인 아들의 심문(questioning)과 관련한 문서와 경찰기록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원에게서 받은 문서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기자들은 신청인의 아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지방법원은 신청인 아들의 범죄 사실이 공익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건파일(criminal files)에 나타난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톨릭교회가 신청인 아들의 훌륭한 행실을 보증하였다는 거짓 주장으로 인해 신청인 아들의 인격의 완전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인 아들과 먼 곳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인격의 완전성이나 존엄성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청인은 항소를 했고, Košice 지역항소법원(Regional Court)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법원이 취재원이 건네준, 아들의 진술이 담긴 심문 관련 문서 사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사에서 주장한 내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는가를 심사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환송심에서 지방법원은 신부인 신청인의 아들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인의 인격의 완전성에 대한 보호 정도는 일반인에

비해 낮고, 공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비판을 더 많이 용인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기사가 범죄사건파일(criminal files) 외의 다른 출처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의 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들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심문관련 문서 사본에 대해서는 신청인 아들의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역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용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기존의 주장에 추가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상의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 및 제8조상의 권리(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소송을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령

(1) 관련 국내법 규정

슬로바키아 민법 제11조는 사인의 인격의 완전성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슬로바키아 민법 제15조는 사인이 배우자나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망자의 부모가 그의 인격의 완전성 보호를 위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유럽인권협약 제8조[3]

1.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2) 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유럽인권협약 제6조상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지나친 형식주의라며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3) 유럽인권재판소가 발행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지침(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사생활이라는 것은 일일이 다 열거하여 정의할 수 없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격의 신체적·심리적 완전성을 포함한다고 한다.

2. 법률에 근거하고 민주사회에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3. 결정요지

(1) 청구의 적법성(Admissibility)

본 재판소는 판례법[4]에 따라서 망자의 친족들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망자를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시해왔다. 나아가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기사의 영향력은 본 재판소의 판례법[5]이 요구하는 심각성 요건(threshold of severity)을 넘어섰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적용이 허용될 만큼 신청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2) 본안판단

본 재판소는 기사의 사실 왜곡과 표현방식이 신청인을 괴롭게 했음이 분명하고, 신청인의 감정, 사생활 및 신상 그리고 죽은 아들의 평판에 상당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이다.[6]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제10조상의 신문사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공정한 균형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감독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본 재판소는 전체 사건의 관점에서 슬로바

---

4) Hadri-Vionnet v. Switzerland, no. 55525/00, § 51, 14 February 2008, Editions Plon v. France, no. 58148/00, § 46, ECHR 2004-IV 및 Putistin v. Ukraine, no. 16882/03, § 33, 21 November 2013
5)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 112, 25 September 2018
6) Putistin 및 Dzhugashvili v. Russia (dec.), no. 41123/10, §§ 27 and 30, 9 December 2014

키아 국내법원이 내린 결정이 본 재판소의 판례법상의 관련 기준[7]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본 재판소는 공적 토론(공익)에의 기여, 기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의 악평(notoriety) 수준, 기사의 내용·형태·결과 및 사진이 찍힌 상황 등 경합하는 권리 사이에 이익을 형량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이미 밝혔다. 본 사건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은 신청인의 아들과 그의 행위가 알려진 정도, 기사의 주제·내용·결과 및 공적 토론(공익)에 기여하는 정도이다.

1) 신청인의 아들과 그의 행위가 알려진 정도

살아생전 신청인의 아들은 잘 알려진 공인이거나 가톨릭교회에서 높은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국내법원은 신부를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보다 더 많이 비판을 용인해야 하는 공인으로 인정하였다.

본 재판소는 형사범죄의 예측 가능한 결과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9] 그러나 형사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형이 실효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이 재판 중에 악평(notoriety)을 얻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악평도 줄어든다. 따라서 사회로의 재통합의 측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와 마주치지 않을 이익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특별히 형이 실효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10]

---

7)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nos. 40660/08 and 60641/08, §§ 95-113, ECHR 2012;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no. 39954/08, §§ 78-95, 7 February 2012; 및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no. 40454/07, §§ 83-93, ECHR 2015

8) Albert-Engelmann-Gesellschaft mbH v. Austria, no. 46389/99, § 27, 19 January 2006

9)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no. 39954/08, § 83, 7 February 2012 및 M.L. and W.W. v. Germany, nos. 60798/10 및 65599/10, § 88, 28 June 2018

10) M.L. and W.W. v. Germany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아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본 재판소의 판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보호가 모두 박탈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의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동안 지켜야할 조건들을 잘 준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신청인 아들의 형이 실효한 후 수년이 지나 본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는 바이다.

2) 기사의 주제, 내용 및 결과

본 재판소는 반복적으로 사실진술(statement of fact)과 가치판단(value judgment)을 구분해왔다.[11] 가치판단이라도 유럽인권협약 제10조[12]상의 공정한 주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사실에 대한 증거(factual proof)를 입증한 정도에 따라 특정 발언이 사실진술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인지 여부가 갈린다는[13]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일정한 의무를 진다.[14] 기자는 신의 성실하게 행동하고 저널리즘 윤리에 따라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 할 때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폭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15]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재판소는 기사의 내용이 선정적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어떤 신문사는 해당 기사를 상스러운 헤드라인과 함께 게재하였고, 또 어떤 신문사는 신청인의 아들의 사진과 함께 해당 기사를 1면

---

11) Morice v. France [GC], no. 29369/10, § 126, ECHR 2015

12)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또는 제약을 따를 것을 요구받거나 혹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13) Scharsach and News Verlagsgesellschaft v. Austria, no. 39394/98, § 40, ECHR 2003-XI 및 Dyuldin and Kislov v. Russia, no. 25968/02, § 48, 31 July 2007

14)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no. 33348/96, § 97, ECHR 2004-XI

15) Godlevskiy v. Russia, no. 14888/03, § 42, 23 October 2008 및 Ageyevy v. Russia, no. 7075/10, § 226, 18 April 2013

에 올렸다. 본 재판소는 신문사들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의 아들이 유죄를 받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술했다고 판단하였다.

슬로바키아 국내법원들은 기사들이 범죄사건파일(criminal files)외의 다른 출처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사실진술과 가치판단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다. 슬로바키아 국내법원이 사실진술과 가치판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사들이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주장한 점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만약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가 자살을 한 시점은 유죄판결을 받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범죄사건파일(criminal files)에는 그의 자살이 기록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약물중독과 의료과실 때문이고, 자살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 신문기자는 신청인의 아들이 자살했다는 정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혹 증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기자는 유죄판결과 자살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본 재판소는 기자들은 믿을만한 취재원이나 시장(mayor) 또는 주교실(bishop's office)의 검증이나 확인을 받은 것처럼 꾸며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슬로바키아 국내법원들은 기자들이 기사 속 내용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애매하게 답변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교실이 신문사와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신청인의 아들의 훌륭한 행실을 보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 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심문관련 문서 사본을 믿을만한 정보라고 인정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지방법원은 이 문서가 신청인의 아들이 기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심문을 기록한 사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심문 기록에 나온 신청인 아들의 진술이 판결주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신문

기자는 해당 사본의 인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기자는 해당 문서를 습득한 방식이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방법과 관련하여 그 어떤 세부사항도 지방법원에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재판소는 슬로바키아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요소와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기자들이 어느 정도 과장을 하거나 도발적인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 신청인 아들의 사생활에 대해 경솔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소는 신문기사의 사실 왜곡과 표현상의 문제가 신청인을 괴롭게 했음이 분명하고, 신청인의 감정, 사생활 및 신상 그리고 죽은 아들의 평판에 상당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바이다.[16]

3) 공익에 대한 기여

본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제10조간 이익을 형량하는 데 있어 공익에의 기여가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해왔다.[17] 본 재판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가톨릭교회 신부들의 사적 행위 및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높은 삶의 기준에 부응하는지 여부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은 공익인 공적 토론에 기여한다고 판시해왔다.[18] 더욱이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은 본 재판소나 국내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정하는 것이다. 본 재판소는 일반적인 시사 문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개별 사건을 인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9]

신부의 성추행과 이에 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태도라는 주제를 논의하

16) Putistin v. Ukraine, no. 16882/03, § 33, 21 November 2013 및 Dzhugashvili v. Russia (dec.), no. 41123/10, §§ 27 and 30, 9 December 2014
17) Von Hannover (no. 2)
18) Verlagsgruppe News GmbH and Bobi, §§ 75, 76 and 80 및 Rothe v. Austria, no. 6490/07, § 55, 4 December 2012
19) Eerikäinen and Others

는 것은 슬로바키아 국내법원이 명시하였듯 공익에 해당되며, 신청인 아들의 사건이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본 재판소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신청인 아들의 적법한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었다. 가령,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범죄 사건파일(criminal files)에서 나온 사실만을 보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토론(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언론사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감시단체로서의 의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제약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극과 오락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선정적이고, 저속한 기사에만 집중하는 언론사와 관련하여서는 고려해야할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다.[2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재판소는 신청인 아들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보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바이다.

4) 결론

본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슬로바키아 국내법원들이 문제가 된 신문기사가 공익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그 기여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공익과 신청인의 사익간의 이익을 형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였다.[21] 슬로바키아 국내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신문사의 표현의 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

20) Mosley v. the United Kingdom, no. 48009/08, § 114, 10 May 2011
21) Ringier Axel Springer Slovakia, a.s. v. Slovakia (no. 3), no. 37986/09, § 83, 7 January 2014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의 사생활 보호와 신문사의 표현의 자유가 경합한 사건이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지침(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이익을 형량해야 하는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진 사인이 제기한 소송인지 아니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신문사가 제기한 소송인지에 따라 적용결과가 달라서는 안 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22)]

유럽인권재판소는 판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이익을 형량하는 기준으로 공적 토론(공익)에의 기여, 기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의 악평 정도, 뉴스기사의 주제, 관련자의 과거 행위, 기사의 내용, 형태 및 결과 그리고 적절할 경우 사진이 찍힌 정황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신문사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를 습득한 방식, 정보의 진실성, 기자나 신문사에 부과된 처벌의 엄중함 등을 고려한다.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의 유의미성은 달라지고, 맥락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본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익형량을 위해 상기 기준 중 ① 신청인의 아들이 유명인이었는지 여부와 그의 범죄가 알려진 정도, ② 문제가 된 기사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및 ③ 기사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된 권리인 범죄자의 잊힐 권리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

22)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91;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23;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7